

2023년 남상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10. 16. ~ 10. 19.(4일)
- 감사범위 : 2020. 11. ~ 감사일 현재
-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계약, 물품관리), 농정, 세정, 복지분야 적정 처리 여부
 - 시설공사 집행(관리) 적정성 및 준공 시설물의 사후관리 실태
 - 민원사무처리 적정 여부, 종전 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 등

II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건)			재정상(천원)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계	환수	부과	추징	계	훈계	경징계	중징계
계	34	15	19	21,420	11,510	-	9,910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	24	12	12	21,400	11,490	-	9,910	-	-	-	-
현 조치요구	10	3	7	20	20	-	-	-	-	-	-

Ⅲ 주요 지적사항 요약

① 회계·계약분야

1)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법인카드 사용 후 짧게는 1일, 길게는 6일이 지난 후 품의(결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사전 품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짧게는 1일, 길게는 6일이 지난 후에 품의 결재 승인을 받는 등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시설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사용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법규에 따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는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의 취득비나 정수 물품 또는 비정수 물품(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의 구입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 등의 경비는 시설비(401-01)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상면에서는 ‘남상면 어울림마을 다목적센터 주방 가스배관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 확인 소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 미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상면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수강용 탁자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생산 여부(직접생산확인증서 제출 등)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4) 공사 선금채권 보전업무 부적정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선금 추가 보증서(보증기간 연장) 미징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용역·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중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연장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선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 남상면에서는 ‘지하마을 앞들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 선금 지급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에 대한 변경된 내용의 추가 보증서(보증기간 연장)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분야

1) 아스콘 재포장 공사 발주 전 일상감사 미이행

구) 지방도 1089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 등 2건, 일상 감사 미이행

-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거창군 일상 감사 규정」 등에 따르면 집행 부서의 장은 전문건설공사,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추정금액이 100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계약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
- '구)지방도 1089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각각 추정금액이 100백만원 이상인 일상감사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미이행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처리, 분리 발주 없이 시공사 직접 시행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 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남진마을 하남지 내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설계 도서에 반영해야 함에도 도급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시행 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소홀

지하마을 소공원 조성공사 등 2건, 하자보수보증금 미 징구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

하거나 보수를 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상면에서는 '지하마을 소공원 조성공사' 등 2건의 조경공사를 시행 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서) 1,46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징구 없이 대가를 지급하였음.

4) 전기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성지경로당 개보수 공사 등 2건,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전기 공사는 전문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부실 시공 방지 및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상면에서는 '성지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2건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업 내용에 포함된 전기공사를 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 하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5)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준공정산 부적정

목적 외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미정산, 3,838천원 과다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정산을 할 때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실적 서류를 검토·확인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를 하여야 하고 간접공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 남상면에서는 '신기마을 수기터골 세천 정비공사' 등 9건에 대하여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실적을 도급자가 제출하였음에도, 안전관리비 3,637천원, 환경관리비 201천원 등 총 3,838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월포농로 정비공사’ 등 1,902건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최종 하자검사 조서와 함께 결과를 제출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 ‘월포농로 정비공사’ 등 1,902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비 5,901천원 과다 지급

- ‘남불마을 세천 정비공사’ 등 8건에 대하여 설계내역서에 따른 현장 소운반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5,901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③ 세무분야

1) 태양광발전시설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 누락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상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420,40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마을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적정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업원분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개인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100,550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3)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자격이 없는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법인에 대한 재산세 5,858천원 부적정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영농조합법인 등 10개의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5,858,5000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4)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누락

미신고·납부 주민세에 대한 조사 미실시, 3,532천원 과세 누락

- 「지방세법」 등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방법에 따라서 징수 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 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연면적 330m² 이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지 않아 주민세(사업소분) 3,532,93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4 복지분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급여관리자 미지정, 본인관리 확인서 미징구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

-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사용) 실태를 주기별로 점검하되,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타인의 급여 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 및 반기별 급여사용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신규 책정된 지적·정신장애인 13명에 대해 급여관리자 미지정 및 사회보장정보(행복e음) 시스템 미등록하였고, 본인이 수급비를 직접 관리하는 자에 대해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 등 2가구의 현금지출 및 타지역 결제 건에 대해 지출내역서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주차표지판 회수·폐기 업무 소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 미송달 및 미회수 사용 시스템 미등록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환통보서를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를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장애인주차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 사망 등으로 장애인등록증이 말소된 ☆☆☆ 등 27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거나, 미회수 사유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소홀

개봉경로당 등 26개소,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개봉경로당 등 26개소의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정산 검사하면서 부적정 지출 8건, 증빙서류 미비 51건, 구입물품 확인불가 8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농업분야

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착오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상면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인 남상면 ◇◇리 ○○○○-○번지에 대하여 공익직불금 1,250,640원(2021년 625,320원, 2022년 625,320원)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기타분야

1) 당직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과오 지급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342천원) 과오 지급

- 재택당직근무 시 초과근무를 한 당직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당직근무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간만큼 제외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정산하여야 하나,
- 초과근무 수당 정산 시 당직근무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시켜 정산하여 초과근무수당 342,370원(28건)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접수) 시 발급대장, 위임장, 신분증 등 누락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사무편람」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받은 위임장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0건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을 처리(접수)하면서, 발급대장 작성 누락, 위임장 누락, 신분증 누락 등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민방위대 교육훈련 대상자 면제처리 부적정

민방위대장 및 소속 대원에게 민방위 대원명부 및 소속·임무 등 미 안내

-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남상면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2건에 대해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 직원으로 면제처리 하였고, 신청서와 증명서류가 미비함에도 면제처리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이장 명부관리 소홀

이장 임명 시 개발위원회 추천서 및 추천자 이력서 미접수(명부관리 無)

-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마을총회에 선출된 사람을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고, 그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에도,

- 남상면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4명의 이장을 임명하면서 개발위원회 추천서 및 이력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이륜자동차 민원사무 소홀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접수 시 수입인지 등 관련자료 누락

-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 및 변경 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수입인지를 같이 접수하여야 함에도,
- 남상면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1건의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입인지 및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등 이륜자동차 민원사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